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'11년 1월 2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전략물자관리팀장 박병찬, 박경숙 주무관(2110-5328)		

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한 美 수출관리규정(EAR) 설명회 개최

- 전략물자 수출기업 무역거래 이해증진 등 정보공유의 장 마련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경환)는 '11.1.28(금) 서울 COEX에서 수출기업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**안전한 무역거래 지원**을 위해 **「미국 수출관리규정(EAR) 설명회」**를 개최함.

* **「전략물자」**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·기술·소프트웨어

* EAR :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

□ 이번 설명회에는 美 **상무부(BIS) 소속 수출통제 담당관이 내한**하여 **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에 대한 세부설명**과 함께 **관련 사례를 소개**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대외무역거래에 많은 도움이 됨.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**미국의 이란제재** 및 **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사례**도 함께 발표됨.

□ 미 수출관리규정(EAR)은 미국 내 자국제품 수출은 물론 미국산 **완제품**이나 미국산 부품·기술이 **일부 포함된** 제품을 **제3국으로 재(再)수출**할 때에도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**자국산 제품의 재수출을 엄격히 통제**하고 있으며, 위반 시 대미무역거래 금지 등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.

□ **지경부 한진현 무역정책관**은 환영인사를 통해 "무역 1조 달러 시대의 무역 강국 위상에 걸맞게 **기업들 스스로 엄격한 수출관리체제를 갖추고** 전략물자 관련 **무역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**을 기울여야 한다"고 강조하면서, "이번 설명회를 통해 **한·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**은 물론 우리 기업들의 **수출통제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**을 적극 발굴·추진하겠다"고 함.

※ 참고1 : 2011년 美 수출관리규정(EAR) 설명회 일정
※ 참고2 :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개요

참고1 미국 수출관리규정(EAR) 설명회 일정

※ 일시 및 장소 : '11.1.28(금) COEX 컨퍼런스룸 402호

시 간		세 부 내 용	비고
10:00~10:05	05′	○ 환영사	무역정책관
10:15~10:20	15′	○ 미국 (재)수출 정책과 규정	Philip Ankel
10:20~11:00	40′	○ 통제리스트 허가요건 - 미국의 통제목록(CCL) 및 통제대상국가표(CCC) - 품목식별 방법	Mi-Yong Kim
11:00~11:30	30′	○ 캐치올 허가요건(상황허가) - 최종용도, 최종사용자, 기타 통제	Mi-Yong Kim
11:30~12:00	30′	○ 허가예외를 이용한 재수출 - 허가예외 정의, 국가그룹 - CCL 기반 허가예외 및 기타 허가예외	Philip Ankel
12:00~13:30	90′	○ 오 찬	
13:30~13:55	25′	○ 허가신청 및 심사절차 - 미국 온라인 허가시스템(SNAP) 개요 - 첨부서류 절차 및 심사 절차	Philip Ankel
13:55~14:20	25′	○ (재)수출통제 집행 및 준수 - 수출집행/사례연구	Philip Ankel
14:20~14:50	30′	○ 미국의 이란제재 - UN안보리결의, 포괄적이란제재법(CISADA)	Mi-Yong Kim
14:50~15:10	20′	○ 한국의 對이란 제재 - 신고·허가 제도, 가이드라인 등	구재림 팀장 (전략물자관리원)
15:10~15:25	15′	○ Coffee Break	
15:25~15:50	25′	○ 수출통제 개혁조치 - 오바마 대통령 비디오 연설 상영 - 수출통제 개혁조치 개요 - 허가예외 STA	Philip Ankel
15:50~16:15	25′	○ 수출관리 및 자율준수프로그램(EMCP) 우수사례	박병준 부장 (Agilent Korea)
16:15~17:00	45′	○ Q&A	

참고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개요

□ 개념

○ **전략물자 수출통제**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대량파괴무기 등의 **유출을 저지하는 제도로서, 수출통제체제 회원국**은 전략물자의 **수출허가**를 통하여 전략물자(**WMD**)**의 확산을 통제**

* 「**전략물자**」란 대량파괴무기(Weapons of Mass Destruction; WMD)와 이의 개발·제조·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·기술·소프트웨어

□ 제도 동향

○ 9. 11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**국제안보의 핵심현안**으로 대두
- **UN 안보리결의**(1540호, '04.4月)를 통해 전략물자 **수출통제제도**는 **국제 규범화**되었고,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

○ 우리나라는 '89년 **대외무역법**시행령에 도입한 이후, '온라인 허가 서비스'인 **전략물자관리시스템**('05.2) 구축 및 전략물자관리 전문기관인 **『전략물자관리원』 설립**('07.6)을 통해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 지원

□ 우리나라 제도 주요내용

○ **(전략물자 고시)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**을 지경부에서 고시

○ **(전략물자 판정)**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(자가판정)하거나, **전략물자관리원**에 의뢰하여 **판정**(사전판정)

○ **(수출허가) 전략물자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**를 받아 수출

○ **(상황허가)** 전략물자 아닌 물자도 WMD 제조 등에 사용 우려시 허가

○ **(자율관리)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**하여 허가 면제 등 혜택

○ **(벌 칙)** 수출허가 등 위반 시 **7년 이하 징역**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**3년 이내 무역제한**